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정원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성폭력사건 현장점검, 시정·보완요구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직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 등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8. ~ 1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장(제1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한시정원

제12조(한시정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여성가족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1 중 총계 “277”을 “279”로 하고, 일반직 계 “273”을 “275”로 한다.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9”를 “42로” 하고,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전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2”를 “2

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7”을 “16”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9”을 “281”로 하고, 일반직 계 “275”을 “277”로 한다.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1”를 “44로” 하고,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전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0”를 “21”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7”을 “16”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여성가족부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5]

여성가족부 공무원 한시정원표

제12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u>정원</u> 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④ (생략)	제9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신설>	<u>제4장 한시정원</u>
<신설>	<u>제12조(한시정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여성가족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보</u>

	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 원해야 한다.
--	----------------------------

신·구정원대비표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77	279	+2
·	·	·	
·	·	·	
일반직 계	273	275	+2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 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9	42	+3
·	·	·	
·	·	·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 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 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2	23	+1
·	·	·	
·	·	·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7</u>	<u>16</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5</u>	<u>4</u>	-1

신 · 구정원대비표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9</u>	<u>281</u>	+2
·	·	·	
·	·	·	
일반직 계	<u>275</u>	<u>277</u>	+2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41</u>	<u>44</u>	+3
·	·	·	
·	·	·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전 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20</u>	<u>21</u>	+1
·	·	·	
·	·	·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 ·	<u>17</u>	<u>16</u>	-1
사무운영서기보	<u>5</u>	<u>4</u>	-1